

부산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1나4089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1나40898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가단308824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부산광역시 A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김주곤

피고, 항소인B

변론 종결2021. 8. 25.

판결 선고2021. 10. 13.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가단308824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9. 8. 29. 체결한 명의신탁 해지약정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부산지방법원 2019. 11. 20. 접수 제599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의 '2019. 11. 6.'을 '2019. 11. 16.'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은명

판사오영두

판사김상현

별지